



승인(협의)번호  
제 340005 호

---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2017. 10

**KBIZ** 중소기업중앙회

# 목 차

## I 조사 개요

1. 조사개요 .....	3
2. 표본설계 .....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7
4. 조사항목 해설 .....	8

## 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11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12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	13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14

## III 조사표

.....	21
-------	----

# I.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17년도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 조사목적

- 매년 6월중 중소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 수 확대(850개업체 → 1,000개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 →  
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 수 확대(1,000개 업체 → 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 배분제 폐지),  
조사 직종 신설(골판지제조공)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 2013. 9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 수 확대(1,200개 →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 수 확대(1,300개 → 1,500개 업체)
- 2016. 6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7.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상시종사자 20인 이상 중소기업  
29,751개 업체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5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 6.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17. 6. 30
- 조사 대상기간 : 2017. 6. 1 ~ 2017. 6. 30
- 조사 실시기간 : 2017. 7. 1 ~ 8. 31

##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팩스조사 병행)

##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결과 중 종사자 20인 이상 중소기업체를 산업 중류별(22개), 종사자 규모별(4개)로 구분하여 표본 틀 구성

###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2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종사자규모별(4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3. 비금속 광물제품
11. 음료	24. 제1차 금속
13. 섬유제품	25. 금속가공제품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8. 전기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1. 기타 운송장비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2. 가구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3. 기타 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종사자규모	
1규모 (20~49인)	2규모 (50~99인)
3규모 (100~199인)	4규모(200인 이상)

###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종사자규모별 목표 오차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사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중분류의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산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목표오차 〉

(단위: 개, %)

업종	기업체수	목표오차
11. 음료	78	7.3%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39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868	7.0%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79	
16. 목재 및 나무제품	244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437	
32. 가구	540	
33. 기타제품	386	
10. 식료품	1,886	6.3%
13. 섬유제품	1,381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717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090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2,717	
23. 비금속 광물제품	955	
24. 제1차 금속	1,309	
25. 금속가공제품	3,866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048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77	
28. 전기장비	1,908	
29. 기타 기계 및 장비	4,19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496	
31. 기타 운송장비	1,131	

- 업종·종사자 규모별 표본수 결정 공식

$$n = \left( \frac{C}{C_y} \right)^2 / \left[ 1 + \frac{1}{N} \left( \frac{C}{C_y} \right)^2 \right]$$

여기서,  $C = S/\bar{Y}$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급여액)

$C_y$  : 목표오차

$N$  : 업종별·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5.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규모별로 층화한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하고,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적절한 분류변수(종사자수, 급여액)를 선정하여 분류변수에 따라 기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 추출

## 3

##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 업종별 · 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산업중분류	종사자 규모								전체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모집단	표 본
	모집단	표 본	모집단	표 본	모집단	표 본	모집단	표본		
10.식료품	1,339	36	379	35	135	21	33	13	1,886	105
11.음료	59	23	16	5	2	2	1	1	78	31
13.섬유제품	1,063	25	230	20	77	13	11	1	1,381	59
14.의복/의복악세서리/모피제품	690	61	123	24	45	14	10	7	868	106
15.가죽/가방/신발	219	26	43	11	14	8	3	3	279	48
16.목재/나무제품	213	25	28	5	3	2	-	-	244	32
17.펄프/종이/종이제품	541	22	127	17	40	16	9	4	717	59
18.인쇄/기록매체복제	363	17	47	12	23	14	4	1	437	44
20.화학물질/화학제품	795	31	231	28	54	14	10	5	1,090	78
21.의료용물질/의약품	119	17	78	12	33	6	9	8	239	43
22.고무제품/프라스틱제품	2,026	24	482	25	165	21	44	6	2,717	76
23.비금속광물제품	745	28	151	16	50	14	9	4	955	62
24.1차금속	912	24	280	20	94	16	23	7	1,309	67
25.금속가공제품	3,089	23	555	21	176	17	46	9	3,866	70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	1,298	33	457	26	212	19	81	14	2,048	92
27.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689	40	194	19	67	21	27	8	977	88
28.전기장비	1,360	31	361	25	157	17	30	9	1,908	82
29.기타기계/장비	3,133	24	754	20	267	18	45	5	4,199	67
30.자동차/트레일러	1,546	30	647	26	226	23	77	12	2,496	91
31.기타운송장비	542	43	295	35	234	10	60	7	1,131	95
32.가구	443	25	73	10	19	12	5	3	540	50
33.기타제품	302	29	65	16	18	9	1	1	386	55
<b>합 계</b>	<b>21,486</b>	<b>637</b>	<b>5,616</b>	<b>428</b>	<b>2,111</b>	<b>307</b>	<b>538</b>	<b>128</b>	<b>29,751</b>	<b>1,500</b>



##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17년 6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2. 급여체계

- 기본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 산 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4.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 직종

- 2년 연속 조사되지 않은 직종 및 유사직종은 아래와 같이 통합 또는 삭제하였으므로 전년도와의 조사결과 비교에 유의해야 함 (\*표시된 직종은 2016년부터 삭제된 직종임)
- 통합직종

당 초	변 경
34.유리절단 및 재단원 + 61.유리제품 제조원*	34.유리절단 및 재단원
124.컴퓨터 H/W기사* + 125.컴퓨터 S/W기사* + 126.컴퓨터 운용사	126.컴퓨터 운용사
129.돌분쇄원 + 130.착암기조작원*	129.돌분쇄원
5.강판원 + 25.판금원	25.판금원
7.공작기계조작원 + 9.밀링기조작원 + 10.보링기조작원	7.공작기계조작원
29.철물재단원 + 32.절단원 + 33.프레스기조작원	32.절단원
101.전자조판원 + 104.컴퓨터 편집사무원	101.전자조판원
100.전산용지정합원 + 106.제본기조작원	100.전산용지정합원

- 삭제직종

당 초	변 경
27.제정기조작원*	직종 삭제
49.리벳팅기조작원*	
68.조선목원*	
119.통신케이블설치 및 수리원*	
123.목공 및 유리공*	
132.인조석가공원*	
3.제도사	
4.현도사	
11.볼반기조작원	
107.전자출판출력원	

- 명칭변경 직종

당 초	변 경
1.기계설계사	1.CAD설계사(기계)
2.회로설계사	2.CAD설계사(회로)
44.연선기조작원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II. 조사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17. 6월중 중소기업(20인 이상, 1,5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일급)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18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78,014원으로 전년(74,445원) 대비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작업반장 96,656원 / 제품출하원 75,192원 / 제품검사 및 조정원 72,958원  
 단순노무종사원 68,899원 / 수동물품포장원 71,177원 / 기계정비원 89,215원  
 특수차운전원 84,574원 / 기계물품포장원 74,427원 / 부품조립원 71,369원  
 전기정비원 90,313원 / 용접원 89,386원 / 절단원 87,136원

-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순위	상위 10개 직종		하위 10개 직종	
	직종명	노임단가	직종명	노임단가
1	CAD설계사(회로)	120,888	재봉원	67,318
2	전기기사	115,569	식품제조원	68,547
3	안전관리사	109,480	단순노무종사원	68,899
4	CAD설계사(기계)	108,531	방직기조작원	68,900
5	전기산업기사	107,480	전자제품조립원	70,166
6	컴퓨터웹디자이너	103,170	수동물품포장원	71,177
7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02,619	부품조립원	71,369
8	배관원	102,029	단조원	71,464
9	기계기술자	98,661	요업원	72,117
10	금속재료품질관리사	98,150	펄프제조장치조작원	72,167

## 2

###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17년 6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이므로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18개 직종의 가중평균임
-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 종사자에서 제외
-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 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8. 1. 1(공표일)

### 3

##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나.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2호, 2015.9.21)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 4

##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7.6월 조사노임	2016.6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	CAD설계사(기계)	108,531	104,559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용 시공도 등을 설계하는 사람
2	CAD설계사(회로)	120,888	118,472	성능과 기능을 갖는 전기 부품 또는 회로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의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6	드릴링기조작원	73,979	73,809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7	공작기계조작원	87,119	79,158	선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로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8	마 킹 원	75,288	72,197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부위에 선 또는 점을 표시하거나 금을 그어 금속제품을 규격 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위치에 표시하는 사람
12	절 곡 원	85,161	80,800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13	귀금속세공원	96,282	91,705	금, 은 등 귀금속 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14	주 물 원	79,941	72,698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
15	단 조 원	71,464	70,597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16	금 형 원	85,500	80,837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17	목 형 원	82,515	82,444*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18	조 형 원	75,246	74,774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드는 사람
19	압 연 원	90,312	88,185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20	압출기조작원	82,567	78,156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21	열 처 리 원	80,866	78,816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22	용 해 원	80,951	73,215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23	인 발 기 조 작 원	79,734	77,366*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7.6월 조사노임	2016.6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24	태핑기조직원	76,312	68,462*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나사산을 가공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25	판금원	85,577	83,130*	강판 또는 철판 등으로 제품을 가공하여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26	합금원	90,792	81,379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합금하는 사람
28	다이케스트원	74,710	67,969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30	쇠틈기조직원	79,127	68,123	밴드소나 금속쇠틈를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31	모형조각기원	88,115	83,602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32	절단원	87,136	76,986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절단프레스기, 샤프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34	유리절단및재단원	90,139	78,282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하거나, 각종 유리제품(초, 병, 장식용 등)을 제조하는 사람
35	밴딩머신조직원	87,001	73,346	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36	금속교정원	89,917	75,424	왜곡된 물체를 밸런스머신기 또는 수동으로 두드리거나 열처리하여 교정하는 사람
37	선반원	81,703	73,294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38	프레나기조직원	72,586	71,319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39	레이저광선원	81,717	68,533*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40	일반화학원	93,246	92,216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 화공약품의 첨가 배합 등을 하여 가공하는 사람
41	요업원	72,117	71,455*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42	합성수지피막원	88,737	87,677*	알루미늄샷시 등의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43	권취원	79,679	70,103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44	연선기·연합기조직원	73,043	68,697	신선된 도체 또는 절연된 도체를 여러 가닥으로 꼬아 합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7.6월 조사노임	2016.6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45	신 선 기 조 작 원	77,373	74,173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46	절 연 원	78,618	69,772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47	피 복 원	75,786	70,445*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48	고 무 제 품 생 산 원	74,396	65,845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배합하여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일반화학원으로 분류한다.)
50	용 접 원	89,386	76,501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51	연삭기 및 연마기 조 작 원	84,041	74,192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52	연 마 원 ( 기 타 )	76,877	67,911	페인트류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지식연마기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53	세 척 원	74,825	73,890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54	목 제 품 도 장 원	75,213	69,079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가구 및 목제품을 도장하는 사람
55	도 장 원 ( 취 부 )	84,482	72,419	완제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56	용 용 도 금 기 조 작 원	76,079	71,444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57	전 기 도 금 원	86,236	75,200*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58	플 라 스틱 사 출 기 조 작 원	78,806	77,500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59	배 합 원	80,743	74,752	혼합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내화물 점토 배합도 포함됨)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7.6월 조사노임	2016.6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60	가 구 제 조 원	82,039	80,422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를 제작, 장식,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2	제 재 원	82,768	73,847	원목을 각재 또는 판재로 제조하는 사람
63	펄 프 제 조 장 치 조 작 원	72,167	71,185	펄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화학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64	합 판 제 조 원	78,980	68,869	베니어(단판)의 겹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65	제 재 기 계 운 전 원	90,229	83,340	제재소에서 목재를 다듬고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락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66	목 재 건 조 기 계 조 작 원	85,564	71,456*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67	제 지 원	75,697	74,884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69	골 판 지 제 조 원	78,181	72,581	판지라이닝을 조작하여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람
70	부 품 조 립 원	71,369	67,420	금속기계부품, 산업용V/V,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전자장비 등의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중간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71	전 기 기 계 조 립 원	78,998	77,796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72	중 기 계 조 립 원	78,612	-	가격이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73	경 기 계 조 립 원	73,755	71,001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74	전 자 제 품 조 립 원	70,166	67,318	가전용 소형 모터, 자동차, 에어컨, 전자부품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75	통 신 기 계 조 립 원	80,496	79,378	통신장비에 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76	화 학 공 학 제 품 시 험 원	94,645	93,530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77	금 속 재 료 제 품 시 험 원	82,727*	80,915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78	전 기, 전 자 및 기 계 제 품 시 험 원	90,146	81,510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79	기 타 공 학 제 품 시 험 원	85,303*	84,331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7.6월 조사노임	2016.6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80	화 학 공 학 품 질 관 리 원	88,923	88,024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1	금 속 재 료 품 질 관 리 원	94,086	92,264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2	전 기, 전 자 및 기 계 품 질 관 리 원	87,268	82,674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3	기 타 공 학 품 질 관 리 원	83,866	82,970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4	화 학 공 학 품 질 관 리 사	102,619	101,865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5	금 속 재 료 품 질 관 리 사	98,150*	96,941*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6	전 기, 전 자 및 기 계 품 질 관 리 사	97,038	96,191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7	기 타 공 학 품 질 관 리 사	-	95,697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8	기 계 정 비 원	89,215	85,904	생산현장 또는 전문분야의 기계를 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89	전 기 정 비 원	90,313	84,417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동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90	차 량 정 비 원	89,088	88,124	차량을 점검·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91	제 품 검 사 및 조 정 원	72,958	67,697	생산현장에서 제품의 조립 및 수평 등의 밸런스를 조정하거나 마무리 작업 또는 마감 처리하는 사람. 또는 완성제품의 최종검사와 불량여부 검사를 하여 제품을 조정하는 사람
92	기 계 기 술 자	98,661	97,000	기계설비의 건설·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서 작성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
93	전 선 원	86,702	76,762*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 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94	배 관 원	102,029	-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공급하는 배관, 연관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95	목 재 포 장 원	82,634	70,060	목재로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등을 제조하여 포장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7.6월 조사노임	2016.6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96	기계 물품 포장원	74,427	68,489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97	수동 물품 포장원	71,177	66,340	판넬 포장, 비닐, 종이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98	철 강 포장원	80,499	67,312	완성된 알루미늄 새시를 비닐봉투에 넣는 등의 철제 대강 또는 제철물을 포장하는 사람
99	제품 출하원	75,192	71,889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100	전산용 지정합원	75,688	69,996	인쇄된 전산용지를 2장 이상 작업 시 한 세트로 정합하는 사람
101	전자 조판원	81,843	79,910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는 사람. 또는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102	교정사	78,693	68,249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103	컴퓨터 웹디자이너	103,170	101,562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사람
105	인쇄기 조작원	91,279	89,866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드는 사람
108	연포장재접합원	77,428*	77,343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109	방직기 조작원	68,900	63,364	생실을 비누나 잣물로 처리 또는 연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하는 사람, 또는 직조기 및 편직기를 조작하여 실을 감거나, 정경기를 이용하여 경사를 정경폭과 밀도에 따라 배열 및 감는 사람
110	방직기계 정비원	79,373	77,875	방직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111	재봉원	67,318	66,495	직물, 모피, 가죽 등의 재료를 가지고 의복이나 기타 직물 제품을 제조하는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112	직물재단사	80,105	78,625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점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113	염직원	79,176	77,470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114	재봉기운용사	73,402	67,231	자동재봉틀을 설비하거나 자동재봉틀을 운전하는 사람
115	제화원	76,968	75,202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신을 제조 또는 수선하는 사람
116	직포원	78,478	73,207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7.6월 조사노임	2016.6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17	편 직 원	78,996	70,567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118	피 혁 가 공 원	76,412	74,634	가죽을 가공하거나 모피 또는 양모가 있는 원피를 처리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120	전 기 기 사	115,569	103,045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121	전 기 산 업 기 사	107,480	95,201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자격증 소지)
122	전 기 기 능 사	97,959	86,394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126	컴 퓨 터 운 용 사	-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127	콘 크 리 트 제 품 성 형 기 조 작 원	85,853	82,527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압축 진동성형기를 조작하고 부분적인 고장 등도 보수할 수 있는 사람
128	특 수 차 운 전 원	84,574	83,850	지게차, 레미콘,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129	돌 분 쇄 원	80,831*	78,695*	착암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돌을 재단, 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석공도 이에 분류한다.)
131	소 성 원	73,574	71,863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하는 사람
133	폐 수 처 리 원	85,357	82,603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134	식 품 제 조 원	68,547	66,662	아이스크림, 양념육, 빵, 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135	단 순 노 무 종 사 원	68,899	66,630	유리 이동하차, 목재선별분류,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 식당 및 각종 현장의 경비원 등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136	작 업 반 장	96,656	94,029	단순노무종사원을 관리하는 반장,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관리 책임자
137	안 전 관 리 사	109,480	108,666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138	벨 트 컨 베 이 어 작 업 원	72,177	70,290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를 구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139	보 일 러 조 작 원	86,975	85,699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배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b>전체평균</b>		<b>78,014</b>	<b>74,445</b>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2. 2017. 6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성(단, 임시·일용근로자, 산업기능요원, 외국인근로자는 제외)
-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코드와 직종명을 기재
-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직종코드	직종명 (※붙임참조)	총인원			월 정상근로시간 (①)	총지급액 (②+③)	기본급 (②)	통상적수당 (③)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소계	남	여					
합계									

조사응답자	성명	소속부서	e-mail	조사원	조사책임자
				인	인

## < 2017. 6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 ■ 기본사항

-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17년 6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 ■ 작성예시

#### ▶ A사의 6월 임금 지급 현황

- 갑(일반화학원) : 6월 한달간 209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을(일반화학원) : 6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병(용접원) : 6월 한달간 209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직종 코드 <sup>1)</sup>	직 종 명 <sup>1)</sup> (※붙임참조)	총인원 <sup>2)</sup>		월 정상 근로시간 <sup>3)</sup> (①)	총지금액 <sup>4)</sup> (②+③)	기본급 <sup>5)</sup> (②)	통상적수당 <sup>6)</sup> (③)	평균일급 <sup>7)</sup> (②+③)/① ×8시간	
		소계	남						여
40	일반화학원	2	1	1	359	5,470,000	4,920,000	550,000	121,894
50	용접원	1	1	0	209	2,280,000	2,080,000	200,000	87,273

- |              |  |
|--------------|--|
| 1) 직종코드·직종명  |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
| 2) 총 인 원     |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
| 3) 월정상 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6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
| 4) 총 지 급 액   | 해당 직종 총인원의 6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   |
| 5) 기 본 급     |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6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
| 6) 통 상 적 수 당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6월 지급된 통상적수당 합계 기재 |
| 7) 평 균 일 급   | 해당 직종 총인원의 6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17년도 최저임금 : 시급 6,470원, 일급 51,760원(8시간), 월급 1,352,230원(209시간)



---

## 2017년 중소기업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발행인 : 박 성 택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0~3157

F A X : 02) 786-2037

인터넷 : <http://stat.kbiz.or.kr/>

E-Mail : [stat@kbiz.or.kr](mailto:stat@kbiz.or.kr)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연구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